

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제1조(목적)

본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인 당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

본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인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,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개별·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제3조(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

1. 내부심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용한다.
2. 내부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내부심의위원회운영기준)

1. 내부심의위원회는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2.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수급사업자는 연간 하도급거래 계약금액이 30억원 이상 업체에 한한다.

제5조(내부심의위원회의 역할)

1. 내부심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2. 내부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·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3. 내부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·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하며,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4. 내부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5. 내부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에 대하여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